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동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4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7.

발의의원 : 신동윤 의원,

곽동환 의원, 전홍배 의원

## 1. 제안이유

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함에 있어,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집행기관의 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일부 규정에 대한 자구를 수정·보완하여 조례 운영을 빈틈없이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2조~제3조)
- 나.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정(안 제9조)
- 다. 증인의 보호, 감사 또는 조사의 공개, 의원의 제척과 회피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정(안 제9조의4, 제11조, 제12조)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- ## 4. 관계법령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 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
 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」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행하는” 을 “하는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 라 한다)를 구성하여” 를 “소관 상임위원회별로” 로, “행한다” 를 “한다” 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 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.

제2조제2항 중 “9일이내로 실시하되,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” 를 “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,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” 로, “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” 를 “감사계획서를 따른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감사위원회” 를 “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” 로, “기재하여야” 를 “적어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본회의는” 을 “본회의에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장 이” 를 ““의장” 이” 로, “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” 를 “때는 바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에게 이를 통보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한다) 를 행할” 을 “한다)를 할” 로 하고, 같은 조

제2항 중 “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” 를 “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적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체없이” 를 “바로” 로, “구성한다” 를 “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” 를 “때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기재한” 을 “적은” 으로, “실시한다” 를 “한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본회의는” 을 “본회의에서” 로, “반려하여야 한다” 를 “반려한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승인된 때에” 를 “승인될 때” 로, “통지” 를 “통보” 로 한다.

제4조 중 “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” 를 “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” 로, “보조를” 을 “도움을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중 “본회의가” 를 “본회의에서” 로, “의결하는 경우에” 를 “의결할 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당하는 경우에는” 을 “해당할 때는” 으로, “조사함에 있어서” 를 “조사하면서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실시한다” 를 “한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처리되는” 을 “처리하는” 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본회의는” 을 “본회의에서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조사위원회는” 을 “조사 해당위원회에서” 로, “필요한 때에는 그” 를 “필요할 때는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“경우에 있어” 를 “경우” 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단, 이에 응할” 을 “단,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이 이에 따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응하여야” 를 “따라야” 로, “조사위원회” 를 “조사 해당위원회” 로 한다.

제9조의2 중 “조사위원회위원장” 을 “조사 해당위원회위원장” 으로, “때에는” 을 “때는” 으로 한다.

제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증인으

로 하여금”을 “증인에게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소리내어 읽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할 때는”으로 한다.

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하며 선서서에는 「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」라고 적어야 하고, 선서는 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제1항 중 “응하지 아니한다”를 “동의하지 않는다”로, “때에는 본회의”를 “때는 본회의나”로, “조사위원회”를 “조사 해당위원회”로, “금지시키거”를 “금지하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부할”을 “내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람에 대하여”를 “사람에게”로 한다.

제9조의5제1항 중 “제9조의제1항”을 “제9조제1항”으로, “거부한 경우에는”을 “거부하면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질서위반행위규제법”을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의6제1항 중 “자를 고발할 경우에는”을 “사람을 고발할 때”로 한다.

제11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공정을 기할”을 “공정하게 할”로, “사안에 한하여”를 “사안에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사위원회”를 “조사 해당위원회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안에 한하여 본회의”를 “사안에만 본회의나”로, “조사위원회”를 “조사 해당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, “아니하도록”을 “않

도록” 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” 를 “감사” 로,  
“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” 을 “위원장” 으로, “지체없  
이” 를 “바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재하고” 를 “적  
고” 로, “첨부하여야” 를 “붙여야” 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시정을 필요로 하는” 을 “시정이 필요한” 으로,  
“때에는” 을 “때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송 받은  
사항을 지체없이” 를 “이송받은 사항을 바로” 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의한” 을 “따른” 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조사위원회” 를 “조사 해당위원회” 로 하며, 「대구광  
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」 을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  
칙」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<u>행하는</u>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하는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행정사무감사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<u>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한다.</u>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, <u>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</u></p> <p>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<u>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④ <u>본회의는</u> 제3항의 감사계획</p>	<p>제2조(행정사무감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관 상임위원회별로</u> ----- ----- <u>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,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</u> ----- <u>감사계획서를 따른다.</u></p> <p>③ ----- <u>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</u>----- ----- <u>적어야</u> -----.</p> <p>④ <u>본회의에서</u> -----</p>

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
⑤ 의회의장(이하 의장 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사무조사)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 라 한다) 를 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 라 한다) 를 구성한다.

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, 조사방법, 조사일정, 소요경비 등을 기재

-----  
-----.

⑤ ----- “의장” 이-----  
-----  
----- 때는 바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에게 이를 통보-----.

제3조(행정사무조사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한다)를 할  
-----.

② -----  
-- 범위의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적어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 바로 -----  
-----  
-----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④ -----  
때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 -----  
-----  
-----.

⑤ -----  
-----  
----- 적은



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 
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 
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  
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  
여야 한다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 
무)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  
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 
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  
시한다.

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 
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.

제7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 본  
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  
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  
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 
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 
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 
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
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  
거나,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 
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 
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·의  
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 
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 
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, 관계  
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  
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, 늦어  
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

-----  
해당할 때는 -----  
----- 조사하면서 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 
무) ① -----  
-----  
----- 한다.

② -----  
----- 처리하는 -----.

제7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 본  
회의에서 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 
----- 조사 해당위원회에서 -  
----- 필요할  
때는 -----  
-----  
-----.  
- 경우 -----  
-----  
-----

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,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증언요구 및 선서)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, 선서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의3(증인 선서의 방식)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 선서서에는 「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」라고 기재하여야 하고,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행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단,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이 이에 따를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라  
----- 조사 해당  
위원회-----.

제9조의2(증언요구 및 선서) -----  
----- 조사 해당위원회위  
원장-----  
----- 때는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의3(증인 선서의 방식)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하며 선서서에는 「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」라고 적어야 하고, 선서는 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.



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,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.

제9조의6(고발의 절차)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공개 원칙)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.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거부하면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-----.

제9조의6(고발의 절차) ① -----  
-----  
사람을 고발할 때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공개 원칙) -----  
----- 다만,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-----  
----- 공정하게 할 -----  
----- 사안에만 -----  
-----.

② ----- 조사 해당 위원회 -----  
----- 때는 -----

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3조(주의의무)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

----- 해당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사안에만 본회의나 -----  
조사 해당위원회-----  
-----.

제13조(주의의무) ① -----  
----- 때는 -----  
-----  
----- 않도  
록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 ① 감사 -----  
-----  
----- 위원장-----  
-----  
----- 바로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적고 -----  
----- 붙여야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

한 처리) ① (생략)

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

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규정)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한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시정이 필요한  
----- 때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이송받  
은 사항을 바로 -----  
-----.

제16조(징계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.

제17조(준용규정) ----- 조사  
해당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「대구광역시  
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-----  
-----.

## 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 (2023.3.21. 일부 개정, 2023.9.22. 시행)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# 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- 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- 사. 공유림 관리
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- 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###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- 가. 지역개발사업
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- 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
- 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####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- 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####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#### 7. 국제교류 및 협력

- 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
-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###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)」 (2023.12.14. 일부 개정·시행)

제53조(운영 규정)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